

「청장관전서」定稿本の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Original Manuscript of
Cheong-Jang-Gwan-Jeon-Seo

오 용 섭(Oh, Yong-Seob)**

◁ 목 차 ▷

- | | |
|-------------|-----------------|
| 1. 서 언 | 3.2 필사시기와 차례 |
| 2. 정고본의 완성 | 4. 국내전본 |
| 2.1 편자와 교정자 | 4.1 규장각소장본 |
| 2.2 권책수와 별본 | 4.2 서울대·성균관대소장본 |
| 3. 필사작업 | 5. 결 언 |
| 3.1 필사자 | <참고문헌> |

< 초 록 >

「청장관전서」는 18세기 중기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덕무(1741-1793)의 여러 저작을 모은 것이다. 처음 이 책은 저자의 아들인 이광규가 편집하고, 이원수가 교정을 하여 완성하였다. 당시 이원수가 교정책임자로 참여한 것은 그의 아버지인 이한술과 저자인 이덕무의 친분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청장관전서」는 모두 71권 32책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다. 최초로 이 책은 1809년 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필사하였다. 이들은 교정자인 이원수의 친인척이거나 부하직원 등의 지인들이었다.

현재 UC Berkeley의 동아시아도서관에는 당시 이원수가 교정하여 최초로 완성한 「청장관전서」, 곧 정고본이 소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청장관전서」는 국내에서 3차례 영인 발행되었으나 그 대본이 된 책들은 정고본을 완전하게 전사하지 못한 것이었다.

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소장된 「청장관전서」는 정고본을 전사한 「청령국지」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UC Berkeley 소장의 정고본을 대본으로 하고, 결락된 부분은 존경각 소장본 등을 수록하여 보다 완전한 「청장관전서」를 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要語 : 청장관전서, 이덕무, 이광규, 이원수, 이한술, 아사미문고, 청령국지

* 본 연구는 2008년도 인천전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인천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woojook@icc.ac.kr)

접수일: 2008년 5월 15일 최초심사일: 2008년 5월 21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23일

<ABSTRACT>

Cheong-Jang-Gwan-Jeon-Seo is the compilation of several works by Yi Deok-Moo(1741-1793), one of the intellectuals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Cheong-Jang-Gwan-Jeon-Seo* was first compiled by his son, Yi Gwang-Gyou. It was later corrected and completed by Yi Won-Soo whose fatehr Lee Han-Sool was assumed to be a friend of Yi Deok-Moo.

Cheong-Jang-Gwan-Jeon-Seo consists of 71 volumes in 32 books. This book was first transcribed by about twenty people since spring in 1809 through next summer. They were relatives or acquaintances, including followers of Yi Won-Soo.

The Asami Collection of C.V. Starr East Asian Library at UC Berkeley has the original manuscript of *Cheong-Jang-Gwan-Jeon-Seo*. corrected and first completed by Yi Won-soo. *Cheong-Jang-Gwan-Jeon-Seo* was so far reproduced three times in Korea, but none of the manuscripts was a complete version.

Cheong-Jang-Gwan-Jeon-Seo held at Jongyoung-Gak library in Sungkyunkwan University includes *Cheong-Ryoung-Guk-Ji* completely transcribed from the original manuscript. Therefore, by using the copy held in UC Berkeley as the base, and then the copy held in Sungkyunkwan University as the complement to the missing parts, it is necessary to publish a complete edition of *Cheong-Jang-Gwan-Jeon-Seo*.

Key words : Cheong-Jang-Gwan-Jeon-Seo, Yi Deok-Moo, Yi Gwang-Gyou,
Yi Won-Soo, Yi Han-Sool, Asami Collection,
Cheong-Ryoung-Guk-Ji

1. 서 언

「청장관전서」는 18세기 중후기 박학다식한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덕무(1741-1793)의 저작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의 활동과 사상은 물론 당대의 시대상황까지도 살필 수 있다. 더욱이 저자는 베끼기를 좋아하여 당시 보거나 들은 바를 수록해 놓은 탓에 지금은 逸失된 자료가 이 책에는 남아있기도 하여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진작 국내에서 영인 국역되었고, 이후에도 새롭게 영인되어 보급되었다.¹⁾ 당시 영인본과 국역본은 규장각소장본으로 臺本으로 삼았고, 혹 규장각소장본에 빠진 부분들은 국내외 다른 도서관에서 보충하여 간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처음 간행할 당시부터 「청장관전서」의 정고본²⁾이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U.C. Berkeley. 이하 버클리대학으로 약칭함)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Chaoying Fang(房兆楹)의 「The Asami Library」³⁾라는 영문해제서를 통해 국내에 알려져 있었다. 또한 이 해제서를 통해 규장각소장본은 정고본의

- 1) 이덕무, 「청장관전서」(서울: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1966); 「국역청장관전서」(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 「청장관전서」(韓國文集叢刊: 257-259)(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 2) 정고본에 대해 千惠鳳 교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고본을 마지막으로 손질 또는 고쳐서 내용을 완전하게 한 것”으로 정의하였고, 일본의 가와세(川瀬一馬)는 「日本書誌學用語辭典」(雄松堂出版, 1983, 196)에서 “고쳐 써서 내용을 결정한 고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병도 박사는 「국역청장관전서」(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의 해제에서 버클리대학 소장의 이 책을 규장각소장 사본의 근원(원래의 사본)이 된다는 뜻으로 原寫本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에 반해 박문열 교수는 “靑莊館 李德懋의 生涯와 著述”(「人文科學論集」, Vol.6,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7)에서 정고본이라고 하였다.
버클리대학 소장의 이 책은 이덕무의 저술을 아들인 이광규가 편집하고, 이원수가 교정한 최초의 「청장관전서」이다. 이원수의 의뢰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필사하여 완성하였으나 간행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완전하게 결정한 사본이다. 그러므로 원사본이면서 정고본이 되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정고본이라는 명칭이 더 합당하다고 여겨 이렇게 일컫는다.
- 3) Chaoying Fang, 「The Asami Library」: A Descriptive Catalogue, Berkeley and Los Angeles: U.C. Press, 1969.
아사미문고는 일본인 아사미린타로우(淺見倫太郎)가 조선에 파견되어 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주로 수집한 한국본이다. 이후 일본의 미쓰이(三井)에게 넘어갔다가 195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 판매되어 오늘날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에 전하고 있는 한국 고서 컬렉션이다.

전사본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렇게 정고본의 존재는 국내에 진작 알려져 있었지만 정고본에 대한 조사나 규장각소장본과의 대비 등 간략한 연구조차 아직 없었다. 그 이유는 정고본이 해외에 있는데다 국내의 전사본과 동일할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평소 관심 있는 항목을 정고본을 통해 살피던 중 국내의 영인본과 내용에 더러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곧 필자가 살핀 적은 분량에서도 국내 전사본은 정고본에 비해 誤記와 문자의 缺落 등이 제법 있었던 것이다.⁴⁾ 그래서 정고본인 이 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매권의 처음과 끝에 교정자인 이원수(1759-1812)의 여러 장서인이 찍혀 있는데다 앞표지에도 자신의 호를 적어놓은 등 이원수의 옛 소장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이 책은 전질이 71권 32책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원수는 교정을 마친 부분부터 신속히 필사하여 짧은 기간에 이 책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809년 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근 20여명의 사람들에게 필사를 의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매권의 끝에 그 권을 필사한 시기와 사람들의 이름을 필사자 스스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정고본과는 달리 영인 국역본의 대본인 규장각소장본이나 또 다른 국내전사본에는 정고본에 있는 필사기록을 완전하게 전사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국내전본만으로는 당시 필사작업에 동원된 사람들 중 일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필자는 전권의 끝에 있는 필사기록도 정고본의 완성과 존재에 큰 의미를 두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실도 소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청장관전서」의 최초 권책수와 그 구성을 밝히고, 다음으로 이원수가 교정을 맡게 된 연유 그리고 규장각소장본에 완전히 전사되지 않은 필사기록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끝으로 아직 학계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소장본의 가치도 밝히려고 한다.

4) 오용섭, “탐인절목으로 본 세조연간 대장경인출,” 『서지학연구』 29집(2005), 319-339.

2. 정고본의 완성

저자인 이덕무의 생애, 사상, 독서관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저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⁵⁾ 저자는 생전에 자신의 저작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망한 뒤에 아들 이광규(1765-1817)의 손에 의해서 정리되게 된다. 마침 이덕무가 죽은 후 정조는 아들 광규를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특채하고 내탕금을 내어 이덕무의 문집을 간행할 것을 명령한다. 이때 규장각 학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이 이 작업을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때 「靑莊館遺稿」라는 서명으로 간행하려한 저자의 시문은 정조의 명령으로 「아정유고」라는 서명으로 바뀌어 간행되었다.⁶⁾ 이 아정유고가 「청장관전서」의 바탕이 되었고, 이때부터 이광규는 아버지의 저작을 차례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곧 이덕무는 평소 자신의 원고를 정리하지 않고 상자 속에 그대로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광규는 이 원고들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깨끗이 베껴 간직하는 등⁷⁾ 아버지의 저작들을 대체로 정리하고 취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암 박지원이 지은 이덕무의 행장에서 저자의 여러 저작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서도 알 수 있다.⁸⁾ 이렇게 이광규는

5) 그 중에서 박문열 교수의 “靑莊館 李德懋의 生涯와 著述”(『人文科學論集』 Vol.6,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7)은 본 연구와 연계성을 가진다.

6) 李光葵, 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 下, 『靑莊館全書』 卷71, 附錄 下(『韓國文集叢刊』: 259,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304), “初以靑莊館遺稿爲集名, 自上有以雅亭遺稿, 爲集名之教, 故以是更定”.

7)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17. 文2. 哀辭, 李奉杲光葵哀辭(『韓國文集叢刊』: 27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410), “奉杲於學甚瞻敏, 靑莊公好抄書, 而未及整門目, 雜置箱篋中, 奉杲手自整之, 次第不亂. 又具紙筆, 淨寫而藏之, 可謂能成其志者也.”

8) 朴趾源, 『燕巖集』 卷3. 孔雀館文稿. 炯菴行狀(『韓國文集叢刊』: 252,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68), “嘗有著書十二種, 曰嬰處稿, 卽少時所著詩文. 自言持身謹行, 當如嬰兒處子, 因以名稿, 曰靑莊館稿. 靑莊卽鵲之別名, 在江湖間, 不營求, 唯食過前之魚, 故一名信天翁, 其自號者, 有以也. 曰耳目口心書, 卽耳所聞, 目所覩, 口所言, 心所思. 曰士小節, 援昔賢遺訓, 以備箴警. 紀今人近事, 以資觀感. 曰清脾錄, 載古今人詩話. 曰紀年兒覽, 起自上古至于明清, 及春秋小國, 而詳於華夷之別. 曰蜻蛉國志, 記日本世系地圖風俗言語物產. 曰盜集記, 卽古今攷據辨證之語. 曰寒竹堂涉筆, 嶠南郵丞時, 記聞見. 曰禮記臆釋, 禮記難字疑義. 曰宋史補傳, 卽奉教編校, 御定宋史筌也, 補撰遺民列傳, 及高麗遼金蒙古

아버지가 죽은 지 15-16년이 되는 1808년 말 또는 1809년 초에 아버지의 저작을 모두 모아 「청장관전서」를 편집한 뒤 이원수에게 교정을 맡기게 된다.

2.1 편자와 교정자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에서 전하는 정고본 「청장관전서」⁹⁾의 각 책의 卷首에는 “完山 李德懋 懋官 著/ 男光葵 奉晷 編輯/ 德水 李畹秀 蕙隣 校訂”이라는 저작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덕무의 저작을 그의 아들인 이광규가 편집하고, 이원수가 교정하여 완성한 것이다. 상백어미가 있는 반엽 10행의 판식을 찍은 뒤 1행당 20자씩 필사하였고,¹⁰⁾ 주석과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단에 이들을 적어 놓았다. 권수에는 또 「綱菴」, 「李畹秀印」, 「蕙隣氏」 등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헤린은 이원수의 자이고,¹¹⁾ 경암은 호로 생각된다. 책표지에도 「綱菴藏」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교정자인 이원수의 옛 소장본임을 분명하다.

저작사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자와 편자는 부자관계이다. 그러나 교정을 맡은 이원수는 덕수이씨로 문중의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교정

傳. 曰磊磊落落書, 繙閱群書, 編輯明末遺民, 未及刪定也.

9) C.V. Starr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0) 靑莊館全書. 卷1-12, 15-16, 19-31, 40-63, 66-71 / 李德懋(1741-1793) 著; 李光葵(1765-1817) 編輯; 李畹秀(1759-1812) 校訂. - 筆寫本. - [漢城]: [刊寫者未詳], 純祖9-10(1809-10) 57卷 26冊(缺本): 四周雙邊 半郭 21.8 × 15.5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白魚尾; 32.1 × 21.0cm

卷末寫記: 庚午(1810)夏, 宣傳三從侄, 書彬洛書. 總三十二卷, 自己巳(1809)春, 至今夏告訖, 而首尾卷, 皆宣傳筆也

印: 綱菴, 李畹秀印, 蕙隣氏

備考: 卷23-24의 1책은 일제시기에 보충한 것으로 정고본이 아님.

11) 「司馬榜目」. 李畹秀. 純祖1年 辛酉 增廣試 進士三等 25位. 字 蕙隣, 生年 己卯(1759). 合格年齡 43. 本貫 德水. 居住地 牙山. 父 李漢述. 德水李氏第九刊世譜: 信編 上(서울: 德水李氏世譜刊行委員會, 2001), 92, “字 蕙隣, 一七五九年己卯六月二十五日生, 一八〇一年辛酉進士, 司饗院主簿, 一八一二年壬申八月二十一日卒”.

을 맡은 것은 그럴만한 인연이나 사정이 있었을 텐데 이 책에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저자인 이덕무(1741-1793)와 교정자의 부친인 이한술(1739-1794)이 知友였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곧 「아정유고」에 “아산에 갔던 이덕무가 이한술과 함께 박기양을 방문”한 시가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시는 아산의 현충사를 방문한 이덕무가 이보다 앞서 현충사가 있는 백암에서 이한술과 함께 인근의 박기양을 찾아보고 지은 것이다. 이한술은 정조 1년(1777)의 식년시에 진사로 입격하였으며 그의 자는 계속이다.¹³⁾ 부친은 行三道水軍統制使를 지냈던 李彥祥이며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이다. 저자와 이한술이 언제부터 친분을 맺었는지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당대의 지식인인 이 두 사람은 庶派로 고위직에 등용되지 못하는 아픔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이원수가 이 책을 교정하게 된 것도 그의 부친과 저자가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친에 이어 아들인 이광규와 이원수도 자연스레 교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간의 직접적인 교유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성해옹(1760-1839)이 남긴 애사와 애시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성해옹의 부친은 성대중(1732-1809)으로 그는 이덕무가 죽은 뒤 애사를 남겼고,¹⁴⁾ 후일 「아정유고」의 발문을 짓기도 하는 등¹⁵⁾ 이덕무를 인정하고 아끼던 지인이었다. 이런 배경에는 담장을 사이에 둔 옆집에 살았던 인연도 컸을 것이다.¹⁶⁾ 그래서 이들 가족은 이덕무 부친의 71세 생신 때에도 함께 축하하며 즐기는

12) 「靑莊館全書」, 卷10. 雅亭遺稿2. 詩2, 牙山白巖 同李繼叔漢述 夜訪朴斯文岐陽(「韓國文集叢刊」: 257,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181, “顯忠祠迥白巖圓, 邨影濛濛靜晝眠, 遙夜河明三五宿, 虛郊水白上中田, 厓霜颯集蛇鳴戛, 嶺月橫鱗虎氣羶, 特地張燈詩話久, 盆花逾復照襟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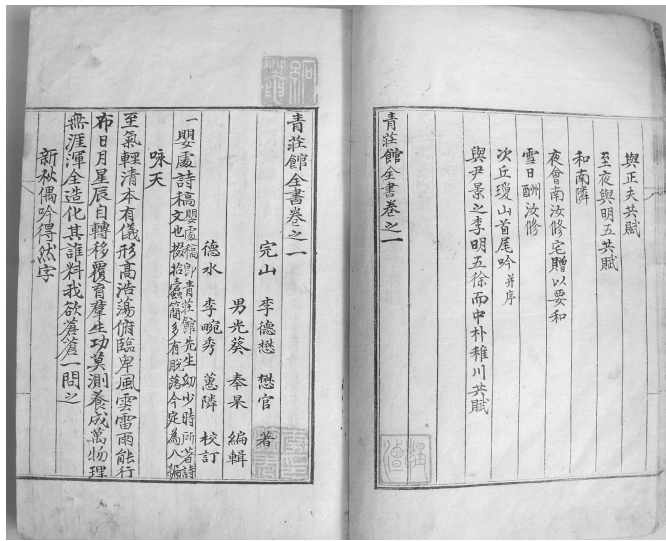
13) 「司馬榜目」, 李漢述. 正祖1年 丁酉 式年試 進士三等 19位. 字 繼叔. 生年 己未(1739). 合格年齡 39. 本貫 德水. 居住地 京. 父 李彥祥 行三道水軍統制使.

14) 成大中, 「靑城集」 卷10. 哀辭. 李愍官哀辭(「韓國文集叢刊」: 24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548).

15) 成大中, 「靑城集」 卷8. 題跋. 雅亭遺稿跋(「韓國文集叢刊」: 24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498).

16) 「靑莊館全書」, 卷19. 雅亭遺稿11. 書5. 成龍汝海應(「韓國文集叢刊」: 257, 서울: 민족문화

등 아주 가깝게 지내는 집안이였다.¹⁷⁾



<사진 1> 버클리대학 정고본의 권수제면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는 이광규와 거의 동년배인 성해웅이 서로 가까운 친구로 지낼 수 있게 해 주었을 것이다.¹⁸⁾ 또 이광규가 「뇌뇌낙락서」의 「補篇」을 엮자

추진희, 2000, 274), “北牆一字齊覆, 渾然無彼疆此界, 交契有通家之誼, 無乃近之, 稍俟晴乾, 會于牆根, 以叙積懷.”

- 17) 「青莊館全書」, 卷71 附錄下。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下(「韓國文集叢刊」: 257,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257), “初三日...公之大人, 七十一歲晬辰也...題其軸曰, 士執, 青城成公大中也...青莊, 困於酒...龍汝, 青城之胤, 海應也, 奉昚, 不肖光葵也, 思黃, 菱溪之胤, 公女婿也, 亦足其軸而書之”
-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17. 文. 哀辭, 李奉昚光葵哀辭(「韓國文集叢刊」: 27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410), “記余戊申春, 見奉昚於太廟西巷之第, 于時青莊公爲積城縣監, 趁其尊公生朝, 具酒食絲竹爲娛, 海應侍先君子往賀之, 座上皆當時名士, 篆籀書畫, 徹夜相屬, 而奉昚方韶婉英妙, 承事左右, 色夷而氣愉, 門戶和洽, 爲人所羨慕。”
- 18)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3 詩. 過利仁驛時主人李奉昚光葵入鶴龍山(「韓國文集叢刊」: 27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53), “翠屏秋色捲簾低, 東望鶴龍一抹微, 恨殺山行留不得, 夕陽孤倚畫欄西, 官樓徑臥似吾廬, 秋日蕭閑數樹疎, 經卷藥爐餘戀在, 行人臨發足躊躇。”

성해응은 「尊周錄」을 지어 이를 마무리하는 등 학문적으로도 뜻을 함께 하였다.¹⁹⁾ 더욱이 성해응은 그가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한 지 8년이 지난 1796년에 정조의 명령으로 규장각 검서관으로 온 이광규²⁰⁾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후일 이광규가 1817년에 사망하자 성해응은 애사를 지었다.²¹⁾

한편 성해응은 교정자인 이원수가 이광규보다 5년 전인 1812년에 사망하자 역시 애도의 시를 지었다.²²⁾ 아마 이들도 가까운 사이였음은 분명한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성해응이 이광규의 애사를 남겼듯이 이원수에 대한 애도의 시를 남긴 것을 보면 이들도 가까운 지인이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고본 「청장관전서」의 교정을 이원수가 맡게 된 것은 이원수의 부친인 이한술과 저자인 이덕무가 서로 지인의 관계였으므로 자식들도 그 인연을 이어 이광규가 이원수에게 교정을 의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때 이광규, 이원수와 함께 교유하며 이들의 학문적 능력을 잘 알았던 성해응의 역할이 전혀 없었을 것 같지는 않다.

2.2 권책수와 별본

청장관전서 의 전체의 권수와 책수에 대해 이병도 박사는 해제에서 71권33책

「日省錄」 正祖 23年 9月 13日, “命鐵原府定配罪人, 成海應放送, 前檢書官, 李光葵冠帶常仕”

1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4. 史籍類1. 史籍總說, 二十三代史及東國正史辨證說, “我王考磊磊落落書, 先君恩暉公, 有補篇, 成知縣海應, 有尊周錄,”

20) 正祖는 그의 死後 3년만인 1796년 그의 아들 光葵를 역시 檢書官으로 삼았다.

21)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17. 文. 哀辭, 李奉杲光葵哀辭(「韓國文集叢刊」: 27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410), “李奉杲, 以當宁丁丑之冬某月某日暴卒, 壽纔五十三歲, 噫其不壽也...辭曰: 人之處世也, 如樹陰之翫, 不過得暫時清涼而止, 雖或有速有遲, 相去無幾, 地下之清幽脩邈, 果有可樂者否.”

22)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4. 詩. 哀李蕙隣晚秀(「韓國文集叢刊」: 27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84), “尙憶城南宅, 懽然笑語親, 爲供懷椒喜, 非是抱關貧, 不幸仍斯疾, 無年摠善人, 丹旌歸漠漠, 湖海失垂綸, 扶櫬無孤子, 摧腸有老親, 茫然歸窅冥, 寧復識酸辛, 末俗皆嗤禮, 微官便誤身, 衰懷違執紼, 南望一沾巾.”

으로 추정하고 있다.²³⁾ 버클리대학에 전하는 책은 모두 57권26책이지만 이 중에서 일제시기에 전사한 권23-24(편서잡고3-4)²⁴⁾을 제외하면 55권25책이 정고본이다. 정고본의 구성과 여러 기록을 보면 <표 1>과 같이 처음 71권32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권13-14, 권17-18, 권23-24, 권32-39, 권64-65 등 16권7책은 결본이다.

전체의 책수가 32책이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알 수 있다. 첫째는 맨 마지막 책의 表題아래에는 “三十二”라는 책수 표시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부록 상하의 말미에 있는 기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기록에는 “이 권은 경오년 여름에 선전관인 삼종질 이서빈이 썼다”고 한 뒤 이어 “모두 32권인데 기사년 봄부터 그 해 여름에 와서 마쳤다.”²⁵⁾고 되어 있다. 이 책의 총 권수는 71권이고, 이서빈이 필사한 분량은 6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한 32권은 바로 물리적인 책수를 의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정고본 「청장관전서」는 최초로 71권 32책으로 구성된 것이었다.²⁶⁾ 이 중에는 권의 차례를 잘못 쓴 곳도 있다. 권50과 권51이 이에 해당하는데 권의 차례는 바뀌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순서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고본은 이광규가 편집하고, 이원수가 교정을 맡아 완성한 최초의 「청장관전서」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책은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국내외에는 사본만이 전하는데 모두 이 책을 전사하거나 다시 전사한 것으로 보면 된다. 혹 정고본에 결락된 권23-24에 기록된 “完山 李德懋 懋官 著/ 達城 徐晩輔 澗松 輯”이라는 저작사항을 보아 서만보가 別本을 엮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도 있다.

23) 이병도, 「국역청장관전서」: 해제,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78, 6.

「靑莊館全書」上: 해제, 서울: 서울大學校 古典刊行會, 1966, vi, vii.

24) 권23-24(편서잡고3-4)는 이마니시류(今西龍) 소장의 「청장관전서」를 전사하여 보충한 것으로 판단됨. 주)44을 참조.

25) 附錄末尾 寫記, “庚午夏, 宣傳三從侄, 書彬洛瑞書. 撿三十二卷, 自己巳春, 至今夏告訖, 而首尾卷皆宣傳筆也.”

26) 이 책의 앞표지 우측 하단에는 “共二十五”와 같이 전체의 책수를 25책으로 표시해 놓았다. 그러나 “共三十二”를 이렇게 번조해 놓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번조한 이유는 결본을 감추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사미가 입수할 당시 남아있는 책수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만보가 남긴 분량이 아주 일부인데다 “編輯”이 아닌 “輯”이라는 의미도 서만보 자신이 본 것을 모았다는 의미로 한정해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별본의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또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는 「古鮮冊譜」에서 「청장관전서」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아사미(淺見)가 수집한 것으로 본 적이 있다. 이 책은 결본인데 남아 있는 것이 40여 책”이라고 하면서 “71권 42책의 「청장관전서」 중에서 17책이 결본이다”²⁷⁾ 고 하였다. 이 내용은 아사미의 소장본을 직접 보았다는 유일한 기록인데 유감스럽게도 정확하지 못하다. 곧 아사미가 소장하던 책과는 그 수량에 있어 10책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71권 42책 중에서 17책이 결본이라는 것은 당시 남아 있는 책이 25책이라는 말이다. 현재 버클리대학의 정고본은 25책이므로 책수는 정확하다. 그렇다면 마에마의 이 기록은 「청장관전서」의 전질을 실재보다 10책이 많은 42책으로 착각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71권 42책의 「청장관전서」 중에서 17책이 결본이다”가 아니라 “71권 32책의 「청장관전서」 중에서 7책이 결본이다”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버클리대학에 전하는 정고본과 권책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므로 마에마의 이 기록은 일제시기에 국내에 전하던 청장관전서는 아사미가 소장하던 정고본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傍證하는 셈이다.

그 외에 이병도 박사가 해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책의 편집자인 저자의 아들 이광규가 家藏本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곧 이광규는 이 책을 필사하던 해의 봄까지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혜경궁 홍씨의 表裏進饌儀軌」를 완성한 포상으로 쌀 1석을 받기도 하는 등²⁸⁾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 7월에는 강원도의 안협현감으로 부임²⁹⁾한데다 9월에는 지역의 홍수피해에 대해 처리를 잘하지 못함으로써 笞刑을 선고

27)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2冊(東京, 東洋文庫, 1956, 1090), 「靑莊館全書」, “此本缺本なり, 所存四十餘冊(淺見氏蒐集所見). 靑莊館全書七十一卷四十二冊內十七冊缺.”

28) 「日省錄」, 1809年 3月 23日 內閣進惠慶宮進表裏進饌儀軌, “檢書官, 李旭秀, 李光葵, 徐有殷, 金履疇, 各米一石.”

29) 「日省錄」, 純祖 10年 7月 11日, “李光葵爲安峽縣監.”
「內閣日曆」, 1810年 7月 11日, “李光葵拜安峽縣監.”

받기도 하였다.³⁰⁾ 비록 안협현감에 제수된 지 5년 뒤인 1815년 6월에 다시 兼檢書官이 되어 서울로 돌아왔지만³¹⁾ 이보다 3년 전에 이원수는 이미 사망해 버렸다. 그 역시 2년 뒤인 1817년에 53세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³²⁾

이와 같이 이광규는 정고본이 완성되던 시기에는 지방관으로 부임해 있어서 이원수의 정고본을 입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이광규가 정고본을 입수 하였더라면 인쇄는 못하였더라도 최소한 또 다른 사본을 남겼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가능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버클리대학의 이 책은 이광규의 편집과 이원수의 교정을 거친 유일한 정고본 「청장관전서」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3. 필사작업

3.1 필사자

이광규가 편집한 「청장관전서」는 71권 32책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다보니 교정 후에 淨書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원수는 교정을 끝낸 부분부터 자신의 친인척은 물론 공사의 知人들을 필사작업에 동원하여 완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각권의 卷尾에 있는 필사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쓴 필사기록은 그 양식을 정해 놓은 탕인지 대체로 필사한 해의 간지와 해당계절, 필사자의 관직이나 이원수와의 관계 및 자신의 성명과 자를 차례대로 기록해

30) 「日省錄」. 1810年 9月 6日, “李光葵照律, 笞四十, 收贖, 附過還職, 私罪施行, 允之, 教以議減一等.”

31) 「日省錄」, 純祖 15年 6月 16日, “李鶴秀曰, 本閣檢書官, 番次近甚苟艱, 前檢書官, 李光葵, 李耆秀, 兼檢書官差下, 何如. 予曰, 依此爲之.”

「內閣日曆」, 1815年 6月 16日. “前檢書官李光葵李耆秀, 兼檢書官差下事, 筵稟蒙允.”

32) 成海應, 「研經齋全集」卷17. 文. 哀辭, 李奉杲光葵哀辭(『韓國文集叢刊』: 27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410), “李奉杲, 以當寧丁丑之冬, 某月某日暴卒, 壽纔五十三歲...奉杲仕至安峽縣監, 而卒”.

놓았다. 버클리대학에 전하는 정고본 55권25책의 필사기록을 권의 차례대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정고본의 권책수 및 卷尾의 필사기록

권수	책수	내용	필사기록	규장각본 ³³⁾ 필사기록
1	1	영처시고1	己巳春宣傳從侄書彬洛瑞書	좌동
2		영처시고2	상동	좌동
3	2	영처문고1	己巳秋宣傳從侄書彬洛瑞書十五張借他手	좌동
4		영처문고2	己巳冬洪友學洙聖習書	좌동
5		영처잡고1	庚午夏金少年永福聖配書	좌동
6	3	영처잡고2	庚午夏金少年永福聖配書之	좌동
7		예기억1	庚午夏威弟金民城盛汝書	좌동
8		예기억2	상동	좌동
9	4	아정유고1	庚午春卞宣傳永植久之書	좌동
10		아정유고2	상동	좌동
11		아정유고3	庚午春三從叔漢晟士明氏書	좌동
12		아정유고4	상동	좌동
13-14	5	결본(아정유고5-6)		결본
15	6	아정유고7	己巳冬典牲署庫直吳俊恒書	좌동
16		아정유고8	상동	좌동
17-18	7	결본(아정유고9-10)		결본
19	8	아정유고11	己巳冬典牲署書員朴孝彬書	좌동
20		아정유고12	상동	좌동
21	9	편서잡고1	庚午春比隣之少年南應煥聲汝書	좌동
22		편서잡고2	庚午春比隣南少年應煥聲汝書	좌동
23-24	10	결본(편서잡고3-4)		결본
25	11	기년아람 상	己巳秋金進士善民希天書 江淸	없음
26	12	기년아람 하	己巳冬金進士善民希天書 江淸	없음
27	13	사소절 상	己巳冬自一至五十四張石隅沈少年灝正夫/書 自五十五至篇終宣傳三從侄書彬洛瑞書	좌동
28		사소절 중	상동	좌동
29	14	사소절 중	己巳冬自一至四十五張芳村李少年養天若/汝 書 自四十六至篇終松谷洪友學洙聖習書	좌동
30		사소절 하	己巳冬自一至四十五張芳村李少年養天若/汝 書 自四十五至篇終松谷洪友學洙聖習書	좌동

31		사소절 하	己巳冬自一至四十五張芳村李少年養天若/汝書 自四十六至篇終松谷洪友學洙聖習書	좌동
32-35	15	결본(청비록1-4, 뇌뇌낙락1-4)		결본
36-37	16			
38-39	17			
40	18	뇌뇌낙락서5	庚午夏典設司書員姜遇文書	없음
41		뇌뇌낙락서6	상동	없음
42	19	뇌뇌낙락서7	庚午夏典設司書員洪繼忠書	좌동
43		뇌뇌낙락서8	상동	좌동
44	20	뇌뇌낙락서9	庚午春典牲暑書員趙完玉書	없음
45		뇌뇌낙락서10	상동	없음
46	21	뇌뇌낙락서보편 상	庚午夏典牲暑書員申景恒書	좌동
47		뇌뇌낙락서보편 하	상동	없음
48	22	이목구심서1	己巳秋典牲暑書員申景恒書	없음
49		이목구심서2	상동	없음
50		이목구심서3	己巳秋威弟金民城盛汝書之	없음
51	23	이목구심서4	상동	좌동
52		이목구심서5	庚午春威從弟金民城盛汝書	좌동
53		이목구심서6	상동	없음
54	24	양엽기1	己巳秋典牲暑書員趙完玉書	없음
55		양엽기2	상동	없음
56	25	양엽기3	己巳秋典牲暑書員朴孝彬書	없음
57		양엽기4	상동	없음
58	26	양엽기5	己巳春典牲暑書員申景恒書	없음
59		양엽기6	상동	없음
60	27	양엽기7	己巳秋典牲暑庫直吳俊恒書	없음
61		양엽기8	상동	없음
62	28	서해여언, 윤회매십전, 산해경보, 열상방언	庚午夏蓮洞宋友在坤士翁並書畫	없음
63		천애지기서, 선굴당농소, 병정표	상동	없음
64-65	29	결본(청령국지 상하)		결본
66	30	입연기 상	庚午夏典設司書員金興孫書	없음
67		입연기 하	상동	없음
68	31	한죽당섭필 상	庚午春上半從弟兼秀禾重書中半美洞金生書 下半金弟民城盛汝書	없음
69		한죽당섭필 하	상동	없음

70	32	부록 상	庚午夏宣傳三從侄書彬洛瑞書揚三十二卷/自己巳春至今夏告訖而首尾卷皆宣傳筆也	좌동
71		부록 하	庚午夏宣傳三從侄書彬洛瑞書摠三十二卷/自己巳春至今夏告訖而首尾卷皆宣傳筆也	좌동

<표 1>에서 보듯이 정고본은 기사년인 순조 9년(1809) 봄부터 경오년인 1810년 여름사이에 필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일을 주도한 이원수³⁴⁾는 1805년 종9품의 예빈참봉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³⁵⁾ 이 책을 필사하던 1809년에는 4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전생서³⁶⁾의 직장으로서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³⁷⁾

필사한 인물들을 보면 삼종질(구촌조카)인 이서빈(1774-1823), 홍학수, 김영복, 친척 동생인 김민성, 선전관인 변영식, 삼종숙(구촌아저씨)인 이한성(1790-1857) 전생서의 고직인 오준항, 전생서의 서원인 박효빈, 조완옥, 신경환, 이웃의 남응환, 진사 김선민³⁸⁾ 석우에 살았던 심호, 방촌에 살았던 이양천, 전설사의 서원이었던 강우문, 홍계충, 김홍손, 연동에 살았던 송재곤, 사촌동생인 이점수(1779-1858), 미동에 살았던 김생 등 약 20인이었다.³⁹⁾ 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그룹은 이원수의 친인척이거나 지인이고, 다른 그룹은 이원수가 재직하던 관

33) 영인본의 대본이 되었던 규장각소장본(규4917). 본고에서는 「靑莊館全書」(「韓國文集叢刊」: 257-259,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을 조사하였음.

34) 주11) 참조.

「古圖書 邑誌類 忠淸道 筮仕 篇」(규장각소장), “...縣監李晩秀, 進士漢述子. 主簿, 見司馬”

「公車文」(규장각 古 5120-29-v.2-110), 廣興守 金永年 等上疏 [初四日], “司饗主簿李晩秀”

35) 「日省錄」, 純祖5年 9月 29日, “再政, 以朴宗來, 爲禮曹參判, 李晩秀, 爲禮賓參奉, 初仕也.”

36) 궁중의식에 필요한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던 관청으로 서울 남산 남쪽 屯智坊에 있었음. 直長은 종7품임.

37) 「日省錄」, 純祖9年 4月 22日, “典牲直長, 李晩秀.”

「日省錄」, 純祖9年 12月 9日, “典牲直長 李晩秀.”

38) 「司馬榜目」, 金善民. 純祖 1年 辛酉 式年試. 進士 二等 10位. 字 希天. 生年 壬辰(1772). 合格年齡 30. 本貫 善山. 居住地 牙山.

39) 김진옥은 「청장관전서」의 해제(「한국문집총간」: 257)에서 “姓名이 명시된 필사자는 友 洪學洙, 戚弟 金民城, 三從叔 李漢晟, 선전관 卞永植, 典牲署 庫直 吳俊恒, 典牲署 書員 朴孝彬·申景恒, 典設司 書員 洪繼忠, 少年 南應煥, 金永福, 金聖配, 李養天, 沈灝 그리고 三從姪 李書彬 등 모두 14명이라고 하였다.”

서에 배속된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규장각소장본은 <표 1>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이 필사기록을 충실하게 옮겼으나 권40의 뇌뇌낙락서 이후로는 대부분 생략해 버렸다. 그래서 규장각소장본에 보이는 필사자는 정고본보다 6명이나 적다.

<표 2> 필사자의 필사권수와 당시 직책 또는 이원수와의 관계

필사자	필사한 권수	필사분합계 (권수)	당시 직책 또는 이원수와의 관계
李書彬	권1-2, 권3, 권28(대략), 권70-71	6권	삼종질
洪學洙	권4, 권29-31(2분의1, 1권반)	5권반	지인
金永福	권5-6	2권	지인
金民城	권50-51, 권52-53, 권68-69(3분의 1, 약 0.7권), 권7-8	6권 3분의 1권	척제
卞永植	권9-10	2권	선전관(지인)
李漢晟	권11-12,	2권	삼종숙
吳俊恒	권60-61, 권15-16,	4권	전생서고직
朴孝彬	권56-57, 권19-20,	4권	전생서서원
趙完玉	권54-55, 권44-45,	4권	전생서서원
申景桓	권58-59, 권48-49, 권46-47	6권	전생서서원
南應煥	권21-22	2권	이웃(지인)
金善民	권25-26	2권	진사(지인)
沈灝	권27(대략)	1권	지인
李養天	권29-31(2분의1, 1권반)	1권반	지인
姜遇文	권40-41	2권	전설사서원
洪繼忠	권42-43	2권	전설사서원
金興孫	권66-67	2권	전설사서원
宋在坤	권62-63	2권	지인
李兼秀	권68-69(3분의 1, 약 0.7권)	3분의 1권	종제
金生	권68-69(3분의 1, 약 0.7권)	3분의 1권	지인

<표 2>에서 보듯이 친인척 중에서 무과 급제자로 삼종질인 이서빈⁴⁰⁾은 첫 부분과 끝부분 등 6권을 필사하였고, 친척동생인 김민성은 6권 이상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필사하여 도움을 주었다. 또 같은 해 진사시에 합격한 13세 연하의

40) 『德水李氏第九刊世譜 : 信編 上』(서울: 德水李氏世譜刊行委員會, 2001), 98, “一八〇〇年庚申, 武科, 折衝將軍營將”.

同郷인 김선민의 도움도 있었고, 「윤희매십전」과 같이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저작들은 그림에 조예가 있는 송재곤이 맡아주는 등 지인들의 도움도 컸다.

당시 이원수는 전생서의 직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이 때 자신의 수하인 오준항, 박효빈, 조완옥, 신경환 등에게 필사를 의뢰하였는데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들은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또 거의 마무리를 지어가던 1810년 여름에는 전설사의 서원들에게도 의뢰하였다. 그러니까 이원수는 정고본의 필사를 위해 공사를 막론하고 필사를 의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두루 부탁하여 1년 반 만에 이 일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3.2 필사시기와 차례

정고본 71권 32책 중에서 결본이 16권 7책이 되므로 필사한 시기와 분량을 정확히 조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남은 권수가 55권 25책이므로 그 대략을 파악할 수는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기사(1809)년에는 모두 27권, 이듬해인 경오년(1810)에는 28권을 필사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사년 가을부터 집중적으로 필사하기 시작하여 1년 뒤인 경오년 여름에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데 1809년 봄부터 시작한 필사작업은 그해 여름에는 필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교정을 끝내지 못해 필사를 의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교정과 연관시켜 본다면 정고본은 기사년 봄과 여름부터 필사를 의뢰할

<표 3> 필사시기로 본 권수

시기	필사한 권	전체권수(55권)
기사(1809)춘	권1-2, 권58-59	4권
기사하		0권
기사추	권3, 권25, 권48-49, 권50-51, 권54-55, 권56-57, 권60-61	12권
기사동	권4, 권15-16, 권19-20, 권26, 권27-28, 권29-31	11권
경오(1810)춘	권9-10, 권11-12, 권21-22, 권44-45, 권52-53, 권68-69	12권
경오하	권5-6, 권7-8, 권40-41, 권42-43, 권46-47, 권62-63, 권66-67, 권70-71	16권

분량의 교정을 끝낸 뒤 그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필사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작업은 이듬해 여름까지 1년여의 시간을 소비하여 완성된 것이다.

이때 이원수는 권을 기준으로 필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권을 묶은 책을 기준으로 필사를 의뢰하고 있다. 그것은 교정본이 이미 권의 단위가 아니라 책의 단위로 묶여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편집자인 이광규가 내용의 구성과 순서뿐 아니라 직접 分冊하여 교정자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또 필사한 차례도 각 권의 차례로 한 것이 아니어서 필사한 차례와 권의 차례가 무질서하다. 이것은 이광규가 자신이 편집한 것을 권의 차례를 무시하고 교정자에게 보냈다가보다는 이원수가 권의 차례를 무시하고 교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권3-5를 담고 있는 제2책은 다른 책과는 달리 필사시기가 특이하다. 곧 기사년 가을과 겨울에 필사한 「영처문고」 권1-2를 이듬해 여름에 쓴 「영처잡고」 권1과 제2책으로 합책하고, 이때 함께 쓴 「영처잡고」 권2는 뒤의 「예기역」과 합책하였기 때문이다. 아마 분량을 고려한 분책으로 판단되는데 정고본을 통틀어 같은 내용이 다른 내용과 함께 장책된 경우는 이것이 유일하다.

4. 국내전본

「청장관전서」에 포함된 저술가운데 「아정유고」는 「청장관전서」를 완성하기 이전, 「사소절」은 이후에 각각 간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책은 간사본을 막론하고 꽤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청장관전서에 수록된 저작들은 간인되어 유통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결본이 있는 경우 보충하기란 쉽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고본의 결본은 16권 7책이나 된다. 물론 정고본을 전사한 규장각소장본도 동일하다. 그 중에서 권13-14와 권17-18에 해당되는 저작들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는 개별저작 중에서 보충할 수 있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문집총간」 시리즈의 영인본은 청

비록」과 「뇌뇌낙락서」 일부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청령국지」는 일본의 동양문고소장본 등으로 보충하여 가장 완전한 「청장관전서」를 간행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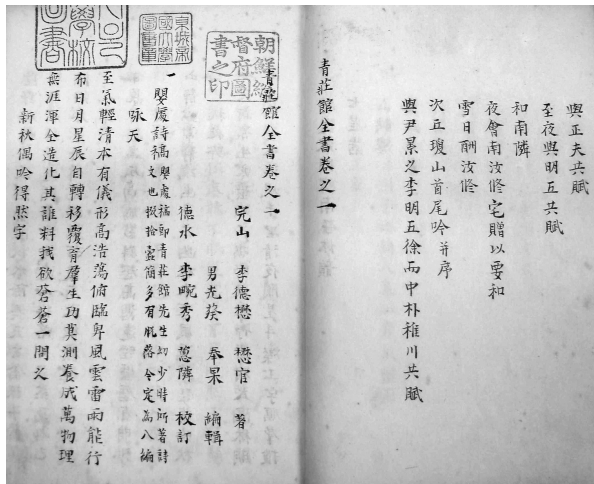
<표 4> 「청장관전서」 결본의 보충

구 분	버클리대학 정고본(1809-10)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1966) ⁴¹⁾	국역청장관전서 (1978)	한국문집총간: 257-259(2000)
권13-14 (아정유고5-6)	결본	결본	결본	결본
권17-18 (아정유고9-10)	결본	결본	결본	결본
권23-24 (편서잡고3-4)	일제시기 필사본	규장각 (고0270-12)	규장각 (고0270-12)	규장각 (고0270-12)
권32-35 (정비록1-4)	결본	김두중	김두중	국립중앙도서관
권36-39 (뇌뇌낙락서1-4)	결본	결본	결본	이화여대
권64-65 (청령국지상하)	결본	결본	[일본 동양문고]	일본 동양문고

4.1 규장각소장본

규장각에는 3종의 「청장관전서」가 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규4917>본은 일찍이 국역본의 대본이 되기도 했고, 근자에는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기도 한 책이다. 이미 소개되었듯이 이 책은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 소장의 정고본을 일제시기에 전사한 책이다. <규4917>본에 대해서는 영인본 해제에서 언급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41) 서울大學校 古典刊行會(1966)의 영인본과 「국역청장관전서」(1978)에서는 권13-14, 권17-18의 결본을 보충하는 뜻에서 권24가 끝난 뒤 활자본 아정유고를 덧붙여 간행하였음.



<사진 2> 규장각본(규4917)의 권수제면

또 다른 규장각본은 모두 23책이다.⁴²⁾ 그런데 이 책에는 <규4917>본에 없는 권23-24, 곧 「편서잡고」3-4가 있다. “京城帝國大學圖書章”의 장서인과 각권의 말미에는 교정을 완료하였다는 “校正濟”라는 검인이 있다. 필사는 1929년 12월부터 1931년 3월까지 이루어졌는데 특히 권60-61의 말미에는 “昭和6년 3월 옛 규장각소장사본을 등사한다”⁴³⁾고 되어 있다. 이 책이 규장각 소장의 <규4917>본의 전사본임을 밝혀주는 글이다. 특히 <규4917>본에 결락된 권23-24의 말미에는 “이마니시류(今西龍, 1875-1932)가 소장한 사본에서 등사한다”⁴⁴⁾고 하여 당해 권의 계통을 따로 밝혀주고 있다. 권미의 필사기록을 보면, 규장각 23책본은

42) 또 다른 규장각 소장본(고0270-12)은 <규4917>본을 대본으로 하여 1929년 12월부터 1931년 2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쳐 제1권부터 권의 차례대로 필사한 것이다. 구성상 <규4917>본과 다른 점은 <규4917>본에 있는 권56-57(양엽기 권3-4), 권66-67(입연기 상하)과 권70-71(부록 상하) 등 3책이 빠져있고, <규4917>본에 없는 권23-24(편서잡고 권3-4)를 필사가 끝난 지 4개월 뒤인 1931년 7월에 필사하여 보충해 놓았다는 점이다. 또 <규4917>본은 정고본의 필사기록을 전사한데 반해 <고0270-12>본은 뒤표지 안쪽 면에 그 책의 필사시기를 기록해 놓았다.

43) 昭和6年 3月 舊奎章閣所藏寫本ヲ 謄寫ス.

44) 今西龍氏所藏寫本ヨリ謄寫ス.

권23-24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1929년부터 필사하기 시작하여 1931년 3월에 일단락되었고, 이후 결락된 권23-24의 존재사실을 확인하자 그 해 7월에 이마니 시류의 소장본을 전사하여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⁴⁵⁾ 특히 이 책은 빨간색 실로 꿰맨 다른 책들과는 달리 흰색 실로 꿰매어 놓아 외형적으로도 구분된다.

권62-63에 있는 「윤희매십전」, 「열상방언」, 「선굴당농소」, 「병정표」 등 4편을 발췌하여 수록한 <고0270-12A>본은 그림의 화법이 뛰어나며 「靑莊館全書 雜書 全」이라는 제침이 있다. 이 책 역시 일제시기의 필사본이다.⁴⁶⁾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위와 동일한 개별저작을 합한 책이 「잡저」라는 서명으로 전하고 있다.⁴⁷⁾

4.2 서울대 · 성균관대소장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청장관전서 권53-63이 있다.⁴⁸⁾ 제1-4책(권53-61)은 「양엽기」 8권, 제5책(권62)은 「서해여언」 등 네 편의 저작, 제6책은 권수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내용은 권63에 있는 세 편의 저작 중에서 「병정표」 한편을 발췌해 놓았다. “京城大學圖書”라는 장서인과 卷首에는 저자와 편집자 그리고 교정자 등의 저작사항이 있다. 다만 정고본과 <규4917>본에 있는 권미의 필사기록은 없으나 규장각본의 일부분을 일제시기에 전사한 것이다.

한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전하는 「청장관전서」⁴⁹⁾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모두 4권 2책의 적은 분량인 이 책의 제1책은 권1-2, 제2책에는 권3-4로 표시해 놓았다. 그러나 수록하고 있는 실제 내용은 「청장관전서」의 권1-4가 아니

45) 이마니시 옛 소장의 이 책은 현재 일본 天理大學 天理圖書館에 전하고 있다. 「해외전적문 화재조사목록」: 일본 천리대학 천리도서관 소장 한국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361)에 따르면 이 책은 徐晩輔(浦)가 엮은 것으로 1960년 3월 31일에 이 대학에 기증되었다. 모두 16권 7책(권7-8, 권23-24, 권48-51, 권54-55, 권58-59, 권60-61, 권68-6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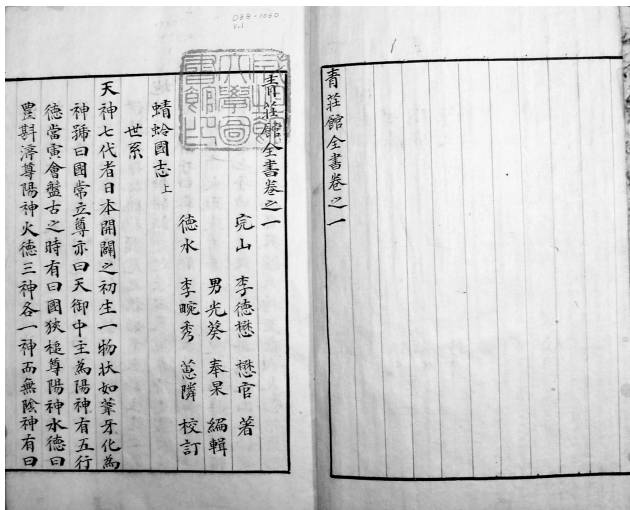
46) 고0270-12A는 모두 39장임.

47)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책이 雜著(위창古3619-1)라는 서명으로 전한다.

48) 일사819.54/Y53c.

49) D03B-1030.

다. 곧 제1책은 권64-65에 해당하는 「청령국지 상하이고」⁵⁰⁾ 제2책은 권46-47에 해당하는 「뇌뇌낙락서보편」 상하이다. 이 중에서 제1책에 수록된 「청령국지」는 버클리대학의 정고본에도 결본이고, 현재까지 국내에는 전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국내간행의 영인본에서도 일본의 동양문고 소장본의 것으로 보충하였던 부분이다. 더욱이 제1책의 권수에는 “完山 李德懋 懋官 著/ 男光葵 奉杲 編輯/ 德水 李畹 秀 蕙隣 校訂”라는 원래의 저작사항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정고본과 같이 10행 20자 형식⁵¹⁾에다 상단에 주석과 교정도 있으므로 이 책의 대본은 정고본이 틀림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책의 말미에는 “32권 중에서 열람한 부분을 베꼈다”⁵²⁾는 글이 남아있다. 이 책은 일제시기에 전사한 것이므로 현전하는 정고본에 결락된 내용들이 일제시기까지 전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진 3> 성균관대학교 존경각본의 권수제면

50) 권말에 八道六十八州全圖의 일부를 그리기는 하였으나 “蜻蛉國輿地圖, 以余拙手, 莫可摸出, 因闕之, 而爲冊中之缺耳”와 같이 자신이 “그리는 소질이 못해 지도는 뺐다”고 하였다.

51) 『한국문집총간』: 259(『청장관전서』)에 수록된 동양문고소장의 「청령국지」는 10행 21자임.

52) 第2冊卷末 寫記, “都合三十二卷內, 其中〇覽〇抄出.”

5. 결 언

미국의 버클리대학에 소장중인 「청장관전서」는 저자의 아들인 이광규가 편집하고, 이원수가 교정하여 완성한 정고본이다. 현재 국내의 전본들은 이 정고본을 바탕으로 일제시기에 필사한 전사본 또는 재전사본이다. 그런데 국내 전존의 전사본은 誤記나 탈락이 있는 등 정고본을 제대로 전사하지 못하였다. 또 정고본의 상단에 있는 주석과 교정도 완전히 옮겨놓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국내전사본을 대본으로 영인, 국역한 「청장관전서」는 내용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추후에는 정고본을 바탕으로 한 영인본의 간행이 요구된다. 다행히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소장의 「청장관전서」 중 한 책은 버클리대학에 소장된 「청장관전서」에도 결락된 「청령국지」를 원래의 정고본에서 전사해 두었다. 이를 미루어보면 일제시기까지 원래의 정고본은 현재 버클리대학에 소장된 권수보다 더 많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보다 완전한 「청장관전서」가 학계에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의 「청장관전서」의 권수에는 교정자인 이원수의 장서인이 찍혀있고, 표지에는 자신의 호가 적혀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주석과 교정을 해당항목의 상단에 적어 놓았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책은 저자의 아들인 이광규가 편집한 것을 이원수가 교정하여 완성한 최초의 「청장관전서」이며 정고본이다.

둘째, 정고본의 권책수는 해제에서 추정한 71권 33책이 아니라 71권32책이었다. 버클리대학 소장본은 이 중에서 권13-14, 권17-18, 권23-24, 권32-39, 권64-65 등 16권 7책이 결본이어서 현재 전하는 것은 55권 25책이다. 결본 중에서 권23-24(편서잡고 권3-4)의 한 책은 일제시기의 전사본인데 이마니시류(今西龍) 소장본을 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정자이자 정고본의 원주인이었던 이원수가 교정자로 선택된 것은 그의 부친인 이한술과 이덕무의 친분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또 성해응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 두 사람에 대한 哀辭와 哀詩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보면 성해응의 역할

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정고본의 필사는 교정자인 이원수가 순조 9년(1809) 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1년여에 걸쳐 공사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완성하였다. 곧 공적으로는 전생서와 전설사의 서원 등과 사적으로는 삼종질인 이서빈 등의 친인척, 진사 김선민 등의 지인 등 모두 20여명의 사람들에게 의뢰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이원수의 친인척이거나 부하직원 그 외에 지인들이었다.

다섯째,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이원수는 권의 차례대로 교정한 것이 아니라 차례에 구애받지 않고 개개의 저작단위로 교정을 끝낸 뒤 필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각 권별 필사시기는 차례가 없으며, 1809년 여름에는 교정을 하지 못한 탓인지 필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섯째, 국내 영인본과 국역본의 대본이 된 규장각소장의 청장관전서 의 오기와 탈락은 정고본과 대교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향후에는 정고본과 함께 국내에 전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이화여대 소장본 외에 성균관대 존경각소장본을 합한 보다 완전한 「청장관전서」의 간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원전 및 영인본]

이덕무. 청장관전서 . UC Berkeley 동아시아도서관소장본(Asami39.102).

_____. 「청장관전서」, 규장각소장본(규4917).

_____. 「청장관전서」, 규장각소장본(고0270-12A).

_____. 「청장관전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본(일사819.54/Y53c).

_____. 「청장관전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소장본(D03B-1030).

_____. 「청장관전서」, 영인본, 서울: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1966.

_____. 「국역청장관전서」, 영인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

_____. 「청장관전서」: 한국문집총간(257-259), 영인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이덕무. 잡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위창古3619-1).

朴趾源. 燕巖集: 韓國文集叢刊(252),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0.

成大中. 靑城集: 韓國文集叢刊(248),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0.

成海應. 研經齋全集: 韓國文集叢刊(273),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古圖書 邑誌類(규장각 소장본).

公車文(규장각 소장본).

內閣日曆.

司馬榜目.

日省錄.

[단행본 및 논문]

德水李氏第九刊世譜: 信編 上. 서울: 德水李氏世譜刊行委員會, 2001.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일본 천리대학 천리도서관 소장 한국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前間恭作. 古鮮冊譜. 東京: 東洋文庫, 1956.

川瀬一馬. 日本書誌學用語辭典, 東京: 雄松堂出版, 1983.

Chaoying Fang. 「The Asami Library」: A Descriptive Catalogue, Berkeley and Los Angeles, U.C. Press, 1969.

박문열. “靑莊館 李德懋의 生涯와 著述.” 「人文科學論集 Vol.6(1987).

오용섭. “답인절목으로 본 세조연간 대장경인출.” 「서지학연구」 30집(2005).

